
입 법 정 보

2018-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6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
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7
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1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8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8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1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9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5
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5
20.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6
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18
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8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0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2
29.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2
3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3
3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3
3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4
3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4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5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3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7
3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7
39.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0
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31
4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1
4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43.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4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3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4
4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4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부).....	36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17. • 마감일자 : 2019. 1. 11.
-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 나.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17. • 마감일자 : 2019. 1. 11.
-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에 맞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계산식을 “ $(F=E \times 11\%)$ ”에서 “ $(F=E \times 15\%)$ ”로 변경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17. • 마감일자 : 2019. 1. 28.
-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을 신설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17. ● 마감일자 : 2019. 1. 28.
- 최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드러난 일부 유치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학기 중 폐원 불가 및 폐원 시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제출(안 제9조 제2항)
 - 나. 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 전원조치 확인의무 부여(안 제9조 제6항 신설)
 - 다. 유치원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봉급·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포함(안 제10조 제1항)
 - 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별표 3, 4 신설)
 - 마.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유아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2항 신설)

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17. ● 마감일자 : 2019. 1. 28.
-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본 시행규칙상에 위임된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 변경·추가 (안 제2조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12. 18. ● 마감일자 : 2019. 1. 28.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12. 18. ● 마감일자 : 2019. 1. 3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

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18. • 마감일자 : 2019. 1. 31.

○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1)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 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1)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19. • 마감일자 : 2019. 1. 28.

○ 원양어업자가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오피서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위임된 오피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오피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건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안 제14조)

- 1)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물량을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읍서버 프로그램 업무 일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안 제19조, 안 제20조)

- 1)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위임된 읍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읍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1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19. • 마감일자 : 2019. 1. 28.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요건 구체화(안 제24조)

- 1)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보관방법, 보조전력공급장치 설비 및 원양어선이 항구에 장기간 입항했을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조치 방법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불량 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12. 19. • 마감일자 : 2019. 1. 2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44호, 2018.8.14. 개정,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 종류 및 고시 위임 근거 마련

(제9조의2)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업무에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가 (제34조)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19. ● 마감일자 : 2019. 1.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반영함.

1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2. 20. ● 마감일자 : 2019. 1. 29.
- 소유자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법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반려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부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률 제고 및 유실·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기준 월령 변경(안 제3조)

1)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으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안 제20조제1항, 별표)

1) 법 제47조 제1항이 ①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②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 제20조 제1항과 별표로 구체화 함.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2. 20. ● 마감일자 : 2019. 1. 29.

○ 유기·유실동물의 증가로 반려동물 등록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이 아닌 단체등 소유의 개를 단체등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사항 및 방법을 개선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月齡)에 미달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등록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한편 소유자의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정비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무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체등의 등록 가능 절차 마련 (안 제8조 내지 제9조)

1) 단체등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마련함.

나.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 등록가능(안 제8조제1항)

1)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허용함.

다.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의무조항 보완 (안 제12조의2제1항)

1)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맹견에 대한 목줄과 입마개, 이동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가슴줄 대신 맹견이 빠져나오거나 풀어질 우려가 적은 목줄을 사용하게 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되 호흡과 발열, 급수(汲水)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통해 이동하도록 함.

라.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 제2항)

1)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형사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함.

마.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와 보호조치(안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

1)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와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격리조치비용과 보호조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44조의 사유로 체포되어 맹견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가족 또는 지정한 자가 맹견의 환부를 원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맹견의 소유권 포기의사를 묻되, 소유권을 포기하면 맹견의 소유는 지자체가 되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맹견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되, 맹견이 3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시 그 소유권을 지자체로 함.

바. 지자체의 보고의무 신설(안 제15조제5항)

1)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지정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와 법 제15

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교육(안 제44조)

- 1) 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의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맹견 최초소유자는 등록신청일 3개월 내 3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 맹견의 사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함.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20. ● 마감일자 : 2019. 1. 29.

- 조합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삭제 및 추가하여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합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안 제36조)

나.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 정관 변경의 경미한 사항 조정(안 제39조)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20. ● 마감일자 : 2019. 1. 29.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 제3조 삭제)
-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철강, 일반형 화물차 운송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이윤,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여 설치하되 센터장 포함 10인 이내로 함. 또한, 신고센터는 위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정)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4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17의2호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20. • 마감일자 : 2019. 1. 29.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제52조의3, 별표1 개정)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제5호바목·제6호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1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10.

○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2017. 5. 19. 지정, 2018. 11. 1. 시행) 됨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제1항)

1)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42조제2항)

1)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도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30.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입법에
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
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
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 1)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 1)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
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20.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30.

-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 ‘18.3.13)됨에 따라 법률
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
개정)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전년도 생산된 화
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하도록 하는 사후보고 체계에서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
고하는 사전보고 체계가 시행됨
- 2) 이에, 원료목록 사전 보고 및 변경보고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등 신설)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정기적 안전성 검토 주기 및 절차와 사용기준 변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로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및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기, 직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명칭·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31조 등 개정, 안 제16조 삭제)

- 1) 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영업의 세부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청구권자가 확대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수입 허가규정이 중복 규제조항으로 삭제됨
-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명칭 및 인용조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31.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5261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5263호, 2017. 12. 19. 공포,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 개정)

-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5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분할납부(안 제9조 제4항 신설)

-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대상 제외(안 별표(총량기준) 제2호가목 2) 신설)

- 1) 외국인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8. 12. 27.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를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2.

○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18.12.11.)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30.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5400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 운행대수를 2분의 1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도입시 재정 지원하는 버스의 범위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면허 부여 기준(안 제15조제1항)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한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 포함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14조제2항)

- 1) 재정 지원대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다. 재정지원 부담비율(안 제14조제3항)

- 1)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정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21. • 마감일자 : 2019. 1. 30.

-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8.9.18)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여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3조의4 제2항 신설)

- 1)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 3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
- 2)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나.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8 제1항 신설, 안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법 개정으로 조 이동을 함에 따라 법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동함
- 2)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공정거래위

원회를 삭제함

- 3)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9. 2. 7.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1)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9. 2. 7.

- 지난 '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 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9. 2. 7.

○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98조제2항)

1)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게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함.

29.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9. 2. 7.

○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및 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교지·교사의 설립자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주거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3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8. 12. 28.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3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2. 24. • 마감일자 : 2018. 12. 28.
-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8. 12. 27.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 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감액 비율을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8조, 제47조, 제48조의2)

- 1)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5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3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봉월액의 40퍼센트(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 1)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3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8. 12. 27.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무직공무원 및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
(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4)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도로현장 근무자 등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 직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기타 제도 정비(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의2, 제19조, 별표 4)

1)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을 강화에 따른 수당 감액을 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가족수당가산금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9. 2. 7.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를 “행정안전부” 로 변경
(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9. 2. 7.

○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안 제12조)

1)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 담당 실·국장으로 조정

나.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1)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10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다. 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1)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 별로 공개하도록 명시

라. 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1) 기부단체의 일반현황, 모집현황,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기부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대토록 신설

마.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신설 및 서식 개정

1)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제9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및 제3호~제10호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3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9. 2. 7.

○ 교사(僑舍)안에서의 공기의 질 관리항목 중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사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4의2)

- 1)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2. 26. • 마감일자 : 2019. 2. 7.

○ 주요내용

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 1)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등 사용 권리를 보장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간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보는 현행규정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정비

3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27. • 마감일자 : 2019. 2. 7.

○ 보호소년등의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

료기록의 관리 및 의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소년의료보호시설 퇴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야 함. 이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호소년등이 희망할 경우 등에 1인실에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보호장비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징계 처분 중인 보호소년등에게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며, 소년원 내에서의 의무 공백 시 관리 체계 개선 및 출원생의 외래진료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2에서 제5조까지)

- 1)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법의 용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칙 내 조문 위치 변경을 통해 보호소년법의 기본원칙 강화를 도모함.
-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처우의 기본원칙을 중시하여 조문 위치를 변경(제5조에서 제2조로)함.

나. 1인 생활 등 근거 마련(안 제8조, 제14조)

- 1) 보호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용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음.
- 3) 보호소년등이 자살,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등을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음.

다. 처우심사위원회(안 제8조의3), 징계위원회(안 제15조의2) 규정 신설

- 1)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보호소년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보호소년등의 처우 등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3) 징계대상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라. 보호장비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안 제14조의2)

- 1) 보호소년등의 신체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보호 장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보호소년등의 인권 강화를 도모함.
- 2) 보호소년등을 이?호송하는 경우 및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방지 등에 필요한 경우 보호대 사용 가능함.

마. 징계 중인 보호소년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 제3항)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의 종류 중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규정 등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45)의 취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의 경우에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규정 신설 필요성이 대두됨.
- 2) 보호소년등이 징계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안 제20조 제4항)

- 1)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함.

사. 진료기록부 등 열람·출력(안 제20조의2)

- 1)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의료인의 장기간 연휴 등으로 인한 의무 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출력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 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 및 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출원생의 외래진료(안 제20조의3)

- 1)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료 외래진료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 2)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소년원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소년원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9.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2. 7. • 마감일자 : 2019. 2. 7.

○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2. 27. • 마감일자 : 2019. 2. 7.
-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 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을 삭제함 (안 별표17)

4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정부에서 발표(10.30.)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5%p분에서 출연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 1)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4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 사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어업의 대상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에 부속선 추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 1) 고정된 ‘바지’에 안강망 어구를 연결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강한 강물의 흐름, 조류, 해류 등으로 고정된 ‘바지’가 조업장애를 유발하거나 안전사고로 연결·발생
-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어구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의 용도·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용
- 3)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별도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

나. 신고어업 대상 법인 제외(안 제2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제22호서식)

- 1) 현행 신고어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
- 2)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가족 외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02.1월)에 따라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다. 어업의 종류 명칭 정비(안 제18조제6항)

- 1)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 명칭이 하위법령의 명칭과 달라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 명칭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치 필요

43.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

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압해 허용 길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나. 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

4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관련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다목)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내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나.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제2호파목)

- 1) 동물 관련 시설 허용 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최소규모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폐교시설 활용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16 제2호어목)

-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과 연계하여 폐교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보육사업의 실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 확대(안 제16조)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 및 벌금형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포함

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33조의2 및 안 제44조)

- 1)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다.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 1)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에 따른 사용 원칙과

보호자에 대한 수납 목적 등의 통지하도록 하고, 보육료의 사용
용도 명시

라.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1)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외로 사
용하는 경우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
실 공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 제
42조의2)

바.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
(안 제45조)

1) 어린이집 시설 폐쇄 사유에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동승
보육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
사.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
대 사고 발생 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으
로 상향(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1) 현행 중대한 안전사고의 경우 최대 1년, 아동학대(원장은 직접
행위자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대 2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최
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 강화 (안 제54조)

1) 현행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
금에 처하도록 강화

4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8

○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5G 서비스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
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을 보편적 역무에 추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 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1)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현황, 보급정도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
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

2) 관련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근거를 마련

나. 요금감면 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5G(아이엠티2020 서비스)를 포
함(안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제2조제3항)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Wibro), 아이엠티이천 서비스(3G) 및 엘티이 서비스(4G)

4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2. 28. • 마감일자 : 2019. 2. 7.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
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
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 신청 (안 제5조)

1)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
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부터 제11조)

1)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
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 설치 (안 제12조)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이의 신청 규정

-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4조)
- 2)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5조)

마. 대체역의 업무 및 복무기관 (안 제17조)

- 1)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19조)

-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2조)

- 1)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4조)
-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함. (안 제25조)

자.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안 제26조)

- 1)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차. 벌칙 규정

- 1) 대체역 편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27조)
- 2)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안 제28조)
- 3)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 제29조)